

의안번호	2200190
의 퇴 인	강대식 의원
회 답 일	2024. 6. 27.
추 계 번호	24B0574

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9조(사업) 제1항제10호 신설	• 공사의 사업 범위에 “「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」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종전부지 개발사업” 추가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9조(사업) 제1항제10호 신설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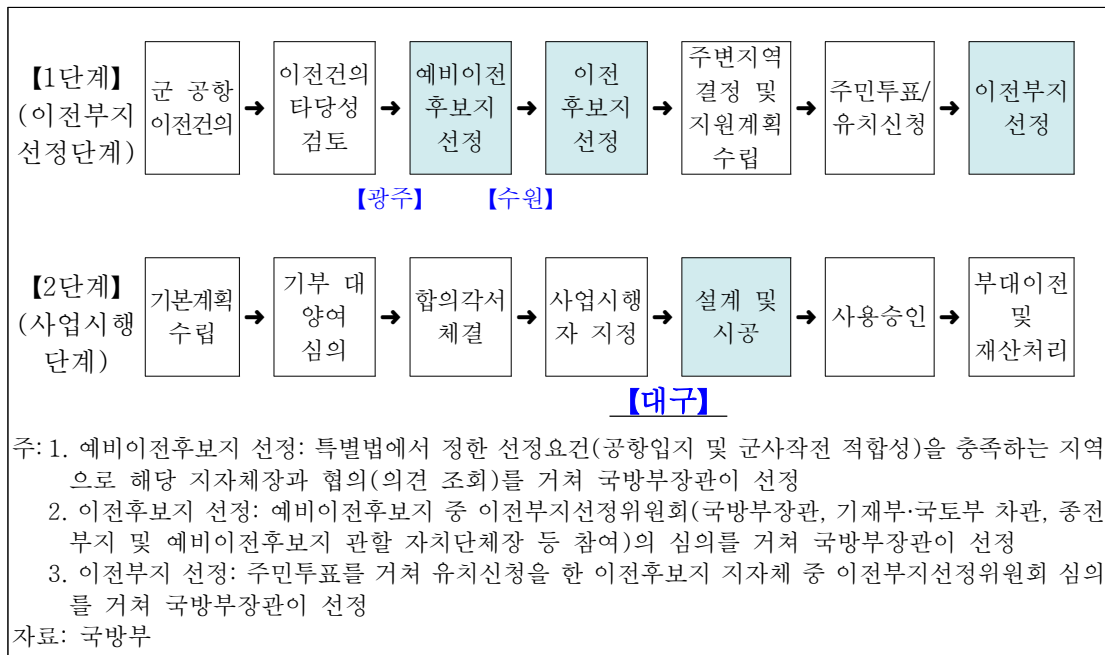
□ 공사의 사업 범위 확대(안 제9조제1항제10호 신설)

- 개정안은 한국공항공사의 사업 범위에 “「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」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종전부지 개발사업”을 추가하는 것으로, 현행법 제12조(보조금 등)¹⁾에 따른 보조 등 국가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
1) 「한국공항공사법」 제12조(보조금 등)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사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하며, 사채(社債)를 인수할 수 있다.

- 「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」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은 현재 이전부지 선정을 완료하고 공항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자 지정이 완료된 상태임

[표 1] 「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군 공항 이전 사업 절차



- 개정안에 따라 한국공항공사가 군 공항 이전사업과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참여할 경우 현 시점에서는 구체적인 참여 대상 사업과 참여 범위 및 참여 조건 등을 알 수 없어 사업 범위 확대에 의한 한국공항공사의 재무 상태 변동을 예측할 수 없고, 현행법에 따른 정부의 보조금 지급 필요성이나 보조금 규모를 예측할 수 없음
- 참고로, 최근 5년간(2019~2023) 현행법 제12조에 따라 정부가 한국공항공사에 보조금을 지원한 사업은 아래 2개이고, 그 밖에 법에서 규정한 용자, 사채 인수 등은 없음

- | |
|--|
| 1. ONE ID 시스템 확대 구축사업
(연도별 지원액) '21년 17억, '22년 17억
(주요사업내용) 전국 14개 공항 대상 스마트공항 구축사업(ONE ID 구 |
|--|

축)으로 비대면 탑승수속 절차 마련

2. 공항소음대책사업

(연도별 지원액) '19년 84억, '20년 78억, '21년 173억, '22년 139억,
'23년 139억

(주요사업내용) 김포공항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·고시된 지역 대상 주택
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, 하절기(6~9월) 주민 전기
료 지원(5만원/월)

자료: 국토교통부

Ⅲ. 부대의견

☐ 없음

Ⅳ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박인재	이유미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박인재	02-6788-4650	powerreset@nabo.go.kr